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1-12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8 -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6나1747 손해배상(저)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B

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. 3. 6. 선고 2025가소352064 판결

변 론 종 결 2026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6. 11. 6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[청구취지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1-12

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1. 원고

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위치	제1심판결 기재	이 법원 기재
3면 밑에서 1~2행	(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)	[구 저작권법(2026. 2. 10. 법률 제21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5조 제4항]
4면 17행	보이는 점,	보이는 점, ③-1 피고는 저작권 침해가 있었던 것은 원데이 클래스이지 창업반 클래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나,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창업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1-12

		클래스 후기에 'C'이 언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,

2. 결론

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신영희

판사 정인재

판사 김기현